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통합허가대행업자의 휴업신고 부담 완화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6421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통합허가대행업자의 휴업신고 부담 완화	2
※ 참고자료	5
1. 단기 휴업시 신고 의무 면제 법률 목록	5

I. 제안경위

2024년 12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통합허가대행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의6).

Ⅲ. 검토의견

1. 통합허가대행업자의 휴업신고 부담 완화

현행법은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그 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의6(업무의 폐업·휴업)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대행업을 폐업하거나 <u>휴업하려는</u>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6(업무의 폐업·휴업) -- ----- ----- <u>30일 이상 휴업하려는</u>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일부를 ‘통합관리사업장’으로 하면서,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통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¹⁾,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허가 서류 작성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술, 인력, 장비 등을 갖춘 환경부에 등록된 대행업체가 허가를 대행하도록 하는 ‘통합허가대행업자 등록제’가 2021년 도입되었음²⁾.

[통합허가대행업체 등록 및 운영 현황]

(단위 : 개)

등록연도	등록업체	영업상태		
		영업중	휴업	폐업
2021	120	97	2	21
2022	40	33	2	5
2023	19	12	1	6
2024	6	6	-	-

※ 출처: 환경부

통합허가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통합허가대행업을 폐업하거나 휴업

- 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통합허가) 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통합관리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배출시설등(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등만 해당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용시기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 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 ①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영업(이하 “통합허가대행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휴업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는데³⁾,

휴업기간에 대한 구분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휴업을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여, 단기 휴업 시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의 탄력적 영업활동에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30일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 신고 의무가 발생하게 하려는 것으로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해당 개정안은 ‘단기 휴업 시 신고 의무를 면제’하도록 정비하는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6개 법률안 중 하나이며, 우리 위원회에도 같은 취지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6419호)이 계류되어 있음⁴⁾.

문 의 처
02)6788-5541

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6(업무의 폐업·휴업)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대행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 참고자료 1. 단기 휴업 시 신고 의무 면제(정부안) 법령 목록 >

※ 참고자료

1. 단기 휴업 시 신고 의무 면제 법률 개정안 목록

연번	정비대상 법률	업종	개정 내용	소관 부처
1	법무사법	법무사업	30일 이상 휴업시 휴업신고	법무부
2	변호사법	변호사업		
3	외국법자문사법	외국법자문사업		
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상시계측관리업		행정안전부
5	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제조·수입업, 승강기 유지관리업		
6	자연재해대책법	방재관리대책 대행업		
7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업		
8	인삼산업법	인삼류제조업		농림축산식 품부
9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기술용역업		산림청
10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엔지니어링사업		산업통상자 원부 (’25.5. 원안가결, 공포)
1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폐자동차재활용업, 폐가스류처리업		환경부
1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허가대행업		
13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수중레저사업		해양수산부
14	어장관리법	어장정화·정비업		
15	항로표지법	위탁관리업		
16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사업	15일 이상 휴업시 휴업신고	해양경찰청 (’25.4. 수정가결, 공포)

※ 출처: 환경부